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위장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0985호, 2025. 5. 27. 공포, 2025. 11.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장애인기업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위장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 1) 법률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자의 확인서 취소 후 확인 신청 제한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현행 제11조의3)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전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2025.9.11. ~ 2025.10.21.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예정

대통령령 제 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3항 중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을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3(장애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8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u>1년</u> 을 말한다.	제11조의3(장애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3년</u> -----.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연 락 처	(044) 204 - 7825